

제285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 
제1차 회의 2022. 3. 22.(화)

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 
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자치행정위원회

#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검토보고

## 1. 제안경과

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이도재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

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
다.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및 홍보, 전문가 자문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 ~ 제7조)

라. 예산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8조 및 제9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
다. 관련부서 : 미래인재과

라. 입법예고 : 2022. 3. 11. ~ 3. 17.(7일간) / 의견없음.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초고속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 사용환경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율이 30.2%로서 성인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.

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·추진을 정하였고,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규정한 조례로써 필요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제8조(예산의 지원)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, 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계비용 미작성함

<지원 예상액>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      | 2022년  | 2023년  | 2024년  | 2025년  | 2026년 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소요<br>예상액 | 35,515 | 35,515 | 35,515 | 35,515 | 35,515 |

※ 기편성 된 「청소년 사회단체 지원」 예산액

- 「청소년 사회단체 지원」은 청소년 관련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(공모)으로,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단체가 공모신청 시 지원 가능

### 4. 작성자

- 미래인재과장 남경화

**☑ 「청소년기본법」**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청소년"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